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작성 방법

☐ 신청인란

- ①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- ② 주민(법인)등록번호: 개인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③ 상호(법인명): 개인사업자는 상호명,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.
- ④ 사업자등록번호: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,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,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.
- ⑤ 주소(영업소):
 - 개인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- ⑥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- ⑦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
☐ 비과세 신청대상 자동차란

- ⑧ 자동차번호: 자동차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⑨ 차 종: 자동차등록증의 차종(승용·승합·화물·특수·이륜자동차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⑩ 배기량: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(cc)을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⑪ 용 도: 자동차등록증의 사용용도(영업용, 비영업용)를 참조하여 적습니다.
- ⑫ 비과세 신청사유: 「지방세법」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비과세 사유로서 수출된 자동차, 천재지변 등에 따른 멸실된 자동차 및 폐차 증명되는 자동차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☐ 문의사항은 시(군·구) 과(☎ -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